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4년 9월 4일(충청북도지사)
- 나. 회부일자 : 2004년 9월 6일
- 다. 상정일자 : 2004년 9월 14일(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가. 제안이유

- 종전의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직제가 개편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도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2003. 12. 27.),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문구를 변경하고,
- 기타 일부 조항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로 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고(안 제3조제1항),
- 이미 제명이 개정된 “공중위생법”과 “충청북도여비조례”를 각각 “공중위생관리법”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수정하였으며(안 제3조제4항 및 제5조),

- 별표 1의 시험종별란중 “하천수, 호소수, 오폐수·분뇨, 폐수검사”에 “침출수 검사”를 추가하였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지용옥)

-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 종전의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직제가 개편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이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 기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된 것과 「충청북도여비조례」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개정된 것이 1999년도인 바,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시 신속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첨부서류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와”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충청북도여비조례”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 지급조례”로 한다.

제5조제8호중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시험종별란중 “폐수검사”를 “폐수, 침출수검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u>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u>”과“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액표에 의하며, 동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동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p> <p>②~③ (생략)</p> <p>④제3항의 여비는 <u>충청북도여비조례</u>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5조(수수료감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그 기능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있다.</p> <p>1~7(생략)</p> <p>8.<u>공중위생법</u>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역수원수 및 옥조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p> <p>&lt;별표 1&gt;</p> <p style="text-align: center;"><b>시험용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시 험 종 별</th> <th style="width: 15%;">처리기간</th> <th style="width: 60%;">시험용검체소요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하천수,호소수,오하수·분뇨,<u>폐수</u>검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4일</td> <td>1.물 4ℓ 이상 2.노말핵산, 페놀, 유기인계, 폴리클로네이티드페닐항목 등 포함시 각 1ℓ 유리용기 별도 채수</td> </tr> </tbody> </table>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소요량	하천수,호소수,오하수·분뇨, <u>폐수</u> 검사	14일	1.물 4ℓ 이상 2.노말핵산, 페놀, 유기인계, 폴리클로네이티드페닐항목 등 포함시 각 1ℓ 유리용기 별도 채수	<p>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 <u>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의</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u>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 지급조례</u>.....</p> <p>제5조(수수료감면) ..... ..... ..... ..... ..... 1~7(현행과 같음)</p> <p>8.<u>공중위생관리법</u>..... .....</p> <p>&lt;별표 1&gt;</p> <p style="text-align: center;"><b>시험용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시 험 종 별</th> <th style="width: 15%;">처리기간</th> <th style="width: 60%;">시험용검체소요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하천수,호소수,오하수·분뇨,<u>폐수</u>,<u>침출수</u>검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1..... 2..... ..... ..... .....</td> </tr> </tbody> </table>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소요량	하천수,호소수,오하수·분뇨, <u>폐수</u> , <u>침출수</u> 검사	.....	1..... 2..... ..... .....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소요량											
하천수,호소수,오하수·분뇨, <u>폐수</u> 검사	14일	1.물 4ℓ 이상 2.노말핵산, 페놀, 유기인계, 폴리클로네이티드페닐항목 등 포함시 각 1ℓ 유리용기 별도 채수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소요량											
하천수,호소수,오하수·분뇨, <u>폐수</u> , <u>침출수</u> 검사	.....	1..... 2..... ..... ..... .....											

## 관계법령 발췌

###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 (수수료 등) ①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 (수수료)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 결과통지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